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
------	-----

제출년월일 : 2000. 9.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무사항 규정
- 자연친화적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리방안 규정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이 폐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민이 자연자산을 이용할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업활동과 관련한 사업자의 자연자산을 보전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의 생태계 보호와 우선적으로 복원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연환경 조사와 그 조사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을 규정함(안 제8조)
- 자연환경조사원의 임명·위촉과 경비지급 및 대행기관을 규정함(안 제9조)
- 가치있는 자연경관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규정함(안 제10조)
-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방안을 규정함(안 제12조)
-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관리계획 방안을 규정함(안 제14조)
-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실관리의무 및 훼손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자연휴식지의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17조)
-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
-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군보게재 (2000. 7.25 ~ 8.13)

평창군 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 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 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도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동·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휴식지의 지정 · 관리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령 제4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 안의 숲 ·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 ·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
3. 영농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7.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1.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파·훼손하는 자
4. 기타 자연휴식지 운영상 입장거절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기준(1일)

1. 청소비 요금표(제18조제1항 관련)

대 인	소 인
2,000원	1,000원

※ 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소 인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 나. 대 인 : 13세이상 64세 이하인 자

2. 부대시설이용료 요금표(제18조제1항 관련)

시설명칭	구 분	이 용 료	
		당 일	체 류
주 차 장	승 용 차	2,000원	4,000원
	대 형 차	4,000원	8,000원
야 영 장	소형텐트 (5인 이하)		2,000원
	중형텐트 (6 ~ 9인)		3,000원
	대형텐트 (10인 이상)		4,000원

※ 위 이용료는 인공적으로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식지 입장객에 한하여 별도로 징수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自然環境保全法

第43條(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44條(자연경관의 보전)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45條(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 ②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 ③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第56條(한국자연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해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등 자연교육과 홍보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第59條(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③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第86條(고궁등의 이용보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自然環境保全法施行令

第42條(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